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군 인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된 군인사법과 중복·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와의 심사기준 일치화를 위해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을 일부 추가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과 중복·배치되는 내용 삭제 (안 제60조의24, 25)

보통(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에

- 1)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2) 위원의 과반수(3분의2)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며,
 - 3) 그 자격요건을 법조인, 의료인, 공무원 등으로 명시하며,
 - 4) 회의 구성 시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지정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함.
- 이에 따라 개정 법률과 중복·배치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

나. 회의록의 공개 (안 제60조의30)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할 의무가 있음.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신설)

다.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 추가 (안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

보훈심사위원회와의 심사기준 일치화를 위해 세부기준 추가(신설)

- 1)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상이를 입은) 사람
- 2)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상이를 입은) 사람
- 3)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상이를 입은) 사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3 제1항제2호다목 중 “2-3-11”을 “2-3-14”로 한다.

제60조의24 제1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4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4 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4 제4항 중 “보통심사위원회”를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의24 제6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4 제7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5 제1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5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5 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5 제4항 중 “중앙심사위원회”를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의25 제6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5 제7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0 (회의록의 공개)

- ①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7]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1-7 중 “(전략)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전략)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의 순직Ⅲ형 중 다음을 신설한다.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중 다음을 신설한다.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 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 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u>2-3-11</u>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이하 생략) 제60조의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사자등 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전 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과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u>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 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 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u>2-3-14</u>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이하 생략) 제60조의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삭 제></u>

인 중에서 참모총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다.

⑦ 보통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위원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0조의25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
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
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
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이하 생략)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
표하며, 중앙심사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제60조의25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위원장은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른 중
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
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중앙심사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현행과 같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
한다.

⑦ 중앙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⑥ <삭 제>

⑦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0 (회의록의 공개)

①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회의록
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
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
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
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
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 대
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의30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 제60조의30은 제60조의31로 이동)

[별표 7] 전사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 수행으로 전상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u>전역 전에</u> 사망한 사람
-----	--

[별표 7] 전사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 수행으로 전상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	---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2-3-4	<u>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u>
2-3-5	<u>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u>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2-3-4	<u>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u> [신설]
2-3-5	<u>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u>

	<u>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u>
2-3-6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u>
2-3-7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2-3-8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u>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u> [종전 2-3-4 이동]
2-3-6	<u>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u> [신설]
2-3-7	<u>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u> [종전 2-3-5 이동]
2-3-8	<u>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u> [신설]

2-3-9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2-3-10	<u>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2-3-11	<u>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u>

2-3-9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u> [종전 2-3-6 이동]
2-3-10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종전 2-3-7 이동]
2-3-11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종전 2-3-8 이동]
2-3-12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u>

	<u>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종전 2-3-9 이동]
<u>2313</u>	<u>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u> [종전 2-3-10 이동]
<u>2314</u>	<u>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u> [종전 2-3-11 이동]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

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7부터 2-3-10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2-3-4	<u>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u>
2-3-5	<u>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 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u>
2-3-6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u>

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2-3-4	<u>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u> [신설]
2-3-5	<u>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u> [종전 2-3-4 이동]
2-3-6	<u>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u> [신설]

2-3-7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u>
2-3-8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u>
2-3-9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u>
2-3-10	<u>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u>

2-3-7	<u>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해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u> [종전 2-3-5 이동]
2-3-8	<u>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u> [신설]
2-3-9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u> [종전 2-3-6 이동]
2-3-10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u>

	<u>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사람</u>		<u>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u> [중전 2-3-7 이동]
23-11	<u>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u>	23-11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u> [중전 2-3-8 이동]
		23-12	<u>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u> [중전 2-3-9 이동]
		23-13	<u>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u>

	<u>사람</u> [종전 2-3-10 이동]
<u>23-14</u>	<u>2-3-1부터 2-3-13까지의</u> <u>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u> <u>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u> <u>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u> <u>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u> <u>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u> <u>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u> <u>· 악화된 사람</u> [종전 2-3-11 이동]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복지실	
연 락 처	(02) 748-3092